

# '영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일시** 2024. 8. 23.(금) 10:00~12:00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



Youtube 라이브 중계



# Program |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 일 시 | 2024. 8. 2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

### | 일정표 |

일 정	세부 일정
10:00	개회 • 사회: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0:00 ~ 10:10	인사말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10:10 ~ 10:40	주제1.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 •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제2.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10:40 ~ 10:45	휴식시간
10:45 ~ 11:45	• 좌 장 :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前서울지회장 정원준 수원대학교 교수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
11:45 ~ 12: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2:00	마무리 및 폐회





# Contents |

## | 발표 |

### 발표1.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1

### 발표2.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13

## | 토론 |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23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26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30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34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38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39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40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前서울지회장 49

정원준 수원대학교 교수 53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54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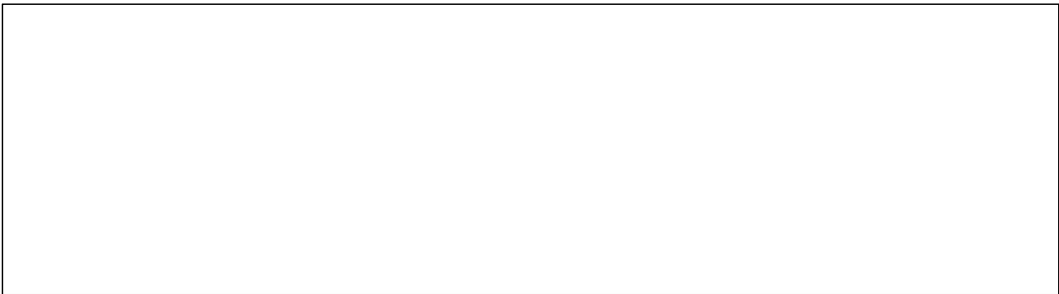


| 발표 1 |

##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


고영미(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

1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 6.



**비전** |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필수 보정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통합인수제에 마련
-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프로그램 개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행시 마련
- 통합교원 지리·영상제에 기반
- 교사차우개선 등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 설립·운영기준 마련



**영유아학교 vs 유아학교**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24년 1002 - 27년 3,1002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통합기관 개요**

-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기존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예: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간 내 설립·운영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행재정 지원 제외 검토

2

## 목 차

- I. '학교'라는 명칭 사용의 근거
- II.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

3

### 1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 '법령에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미흡

다수의 법령은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국민들 인식 속에는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문무경, 김은영, 이세원, 2008).

✓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 미흡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라는 위상 속에서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령을 통해 책무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데 비해, 유아교육의 경우는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령에서 해당기관과 연한만 명시하고 있어 '학교'로서의 실질적인 위상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

4

## 1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 공교육의 시작으로서 유보통합기관의 위상 제고

'공교육'의 시작으로서 '학교'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고히 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이라는 교육기관의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도록 하는 분위기 형성(조부경, 2023)

### ✓ 재정의 안정적 투입, 관리를 통한 국가의 책무성 확보

교육부로 통합된 0-5세를 위한 통합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여야 하고, 학교로 일원화된 체제에 서는 재정을 안정되게 투입·관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음(박은혜 외, 2019).

5

## 2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 ✓ 평생학습의 토대로서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 인식

UNESCO 보고서(Kaga, Bennett & Moss, 2010)를 보면, 유아는 태어나면서 학습자라는 인식과 유아기 교 육이 전생애 걸친 평생학습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정옥, 2015)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진행

### ✓ 영유아의 삶의 관점에서 경험의 연결과 통합 강조

- UNESCO의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출생부터 초 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여 0단계로 분류하고 8단계 박사학위 수준의 상위 교육과 연결된 맥락 지향
- 스웨덴은 영유아교육을 각급 학교와 동일한 학교 체제로 보고 교육법(Skollag/Education Law)에 명시 하고, 돌봄의 차원을 넘어선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김정준, 최지은, 박건령, 2023)

6

## 2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 ✓ 기관 간 연계성과 연속성 강화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영유아가 각기 다른 형태의 기관과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조부경, 임수진, 고영미, 2022)
- 0-2세와 3-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전 생애의 기초 교육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영유아교육·보육과 초·중등교육과의 연속성 및 연계성에 대한 고려(Moss, 2015)가 필요함

### ✓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강화

학교라는 일관된 체제 속에서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교육적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신동주, 2015)

7

## 3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세-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 ✓ 학교로 명시된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
-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서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

### ✓ 법에 명시된 유치원을 학교로 변경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을 '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자연스럽고 타당한 명칭임

8



### 3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세-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학교교육의 대상 확대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로 명시
- 정부조직법의 통과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학교교육의 대상자가 0-2세를 포함하여 대폭 확대됨

✓ 0세-5세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 통합된 법에 유치원을 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교육의 제도 내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임

9

### 4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 '유아학교' 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 시작

1997년 6월 김영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교육개혁위원회, 1997) 시작됨

✓ 교원단체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및 노력

- 202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안한 이후 5차례 교육부와 교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노력 진행
- 2023년 2월 15일, 설립이념과 성격에 차이가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3개 노조 및 단체가 연대하여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출범하여 명칭 변경 관련 여론 형성
- 2024년 7월 31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0~5세 통합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

10

## 4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 ✓ '학교' 로 명칭 변경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 단체의 요구

- 유아교육·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총 17개의 참여 그룹 중 14개의 그룹이 '학교' 명칭에 찬성함
-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일제의 잔재 청산과 학교 정체성 강화로 영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위상 확립을 원한다고 응답함(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 ✓ '학교' 로 명칭 변경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 학부모의 경우, (영)유아학교 명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8.8%, 동의한다 29.3%, 보통이다 33.4%, 동의하지 않는다 17.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4%로 나타남
- 동의하는 이유로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17.5%)가 1순위로 나타남(박창현 외, 2022)

11

## 4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 ✓ '학교' 로 명칭 변경에 대한 학계의 요구

- 유보 통합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질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삶의 관점에서 생애 초기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함(고영미 외, 2002; 조부경, 2002)
- 우리나라의 모든 0세~5세가 출생에서 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문미옥, 2007, 2022; 조부경, 임수진, 고영미, 2022)

12

## 5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화 추세 반영

### ✓ 초등학교의 명칭 변화

- 소학교(1895년-1905년), 보통학교(1906년-1937년), 소학교(1938-1940년), 국민학교(1941년-1995년), 초등학교(1996년-현재)로 명칭이 변화해 옴
- 1995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 ✓ 유치원 명칭의 변화에 대한 요구

- 유치원(幼稚園)은 독일에서 유래된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을 일본이 번역한 '요치엔(ようちえん)'을 한국어로 음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1897년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세운 '부산유치원'부터 사용
- '나이가 어리다',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를 뜻하는 유치하다는 어근으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사용됨
-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Kindergarten의 번역표현으로서 주로 '유아원(幼兒園)'을 사용함
-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주장이 제기됨

13

## 6 영유아교육보육기관 명칭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고려

### ✓ 학교라는 명칭 사용

- 교육부로 일원화된 국가 중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통합기관의 명칭으로 '학교' 포함
- 이원화된 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호주 포르투갈은 교육부처에서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학교' 포함

### ✓ 유아학교라는 명칭 사용

- OECD 회원국 중 완전통합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덴마크 등과 부분 통합 국가 중에서도 유아교육을 학제화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대개 '유아학교'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조부경, 2023)
- 스웨덴의 경우 통합 이전에는 생후 3개월에서 4세 아동을 위한 종일제 보육시설(Barnkrubban)과 3~7세 아동을 위한 반일제 유치원(Barnträdgården) 등 두 가지 형태의 시설 형태가 있었으나, 1996년 교육과학 부로의 통합 이후 1998년부터는 '포르스콜라(Förskola)'로 완전 통합

14

## II.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칭

### 1.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

### 2. 영유아학교 & 유아학교

15

### 1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

- ✓ 놀이가 삶이며, 놀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 인간은 태내에서 놀이를 시작하며 놀이와 더불어 살아가기에 놀이하는 존재임(Huizinga, 2011)
- 영유아교육의 본질은 놀이로부터 시작되며, 영유아기 놀이는 학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며 목적임
-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영유아교육의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펼치는 공간을 학교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에 맞추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이 제4차 버전까지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음

16

## 1 학교에 포함되는 대상

### ✓ 긍정적인 뇌 발달을 위한 환경이 필요한 존재

- 생후 첫 3년 동안 영유아가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시냅스(synapse)가 만들어지는데 뇌는 가소성 (plasticity)이 있어 자극받지 않은 뉴런과 시냅스들은 퇴화함
- 뇌 발달은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뇌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적절한 영양소를 제공해주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가 다양한 환경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적절한 감각적, 정서적, 사회적 경험이 없으면 뇌 발달에 중요한 기본 역량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김경철, 이인선, 2012; 박수경, 이효림, 2022)
- 근래 OECD국가들은 영아기 뇌 발달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함

17

## 2 영유아학교 & 유아학교

- 인간은 태내에서 놀이를 시작하며 놀이와 더불어 살아가기에 놀이하는 존재이고(Huizinga, 2011), 우리나라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에 맞추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OECD국가들은 영아기 뇌 발달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아와 유아 모두 학교라는 체제 속에 포함하여 출생에서부터 교육과 보육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8

## 2 영유아학교 & 유아학교

- 반면, 학문적으로 유아교육의 대상은 태내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영유아로 할 경우 영아와 유아의 분리가 부각된다는 점등을 고려 할 때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데 동의한다면 '유아학교'라는 명칭 또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치원의 대상이 1991년까지는 4, 5세였다가, 1992년부터 3세까지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부터 0세까지로 확대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같이 명칭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0세-5세를 유아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보통합기관의 대상이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0-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학교'가 적절할지 '유아학교'가 적절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19

감사합니다

20

| 발표 2 |

#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 원칙

- **명확성:** 명칭은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명칭을 통해 누구나 기관의 주된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중립성:** 명칭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측 중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함.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함
- **포괄성:** 명칭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의 요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명칭은 포괄적이어서 서로 다른 아동들이 모두 포함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적 적합성:** 명칭은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음. 이는 해당 커뮤니티의 문화적 가치와 어울리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수용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줌

##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 원칙(계속)

- **지속 가능성:** 명칭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와 의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유행을 따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성을 잃을 수 있는 명칭은 피해야 함
- **확장성:** 명칭은 향후 서비스의 확장이나 다른 유사 기관과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함. 너무 특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명칭은 나중에 기관의 역할이나 범위가 확장되었을 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음
- **법적 검토:** 선택된 명칭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명칭이 다른 기관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 원칙들을 통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기관의 명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대상연령

The image displays two documents related t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On the left is the cover of the UNESCO report titled "Global Report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e right to a strong foundation". It features the UNESCO and UNICEF logos at the top and a photograph of three young children playing joyfully. On the right is a page from the "Education 2030 Agenda" document, which includes text about the Global Education 2030 Agenda and the role of UNESCO and UNICEF. A red box highlights the copyright notice "© UNESCO and UNICEF, 2024" on this page.

Table A 1

Conceptualization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147쪽

Organization	Terminology	Definition
UNESC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concerns children from (before) birth to age 8, beginning from prenatal care to promoting a smooth transition to primary school. It includes both in-home and out-of-home settings and can target parents, caregivers and children. The role of families in ECCE is paramount; parents are children's first educators and caregivers. ECCE includes 'care' (health, nutrition and child care in a nurturing environment) and 'education' (play, socialization, guidance and developmental activities), ideally provided in an integrated manner. UNESCO promotes ECCE as part of its mandate to support countries to implement normative and standard-setting instrument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and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
UNICEF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Used interchangeably with pre-primary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refers to organized learning programmes for children aged 3 years and up to the start of primary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is recognized as an outcome that encompasses the physical, cognitive, motor, languag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early years. <u>This period is typically defined as the period from birth to 8 years of age.</u> UNICEF's work focuses on the period from birth up to primary school entry, with emphasis on the first 1,000 days as this is the most sensitive period for children's physical growth and brain development.
WHO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refers to the cognitive, physical, language, motor,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between 0 and 8 years of age. One of the components, early learning, refers to any opportunity for the baby, toddler or child to interact with a person, place or object in their environment, recognizing that every interaction (positive or negative, or absence of an interaction) contributes to the child's brain development and lays the foundation for later learning.

World Bank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The World Bank uses ECD, ECE and other terms to align with the terms used by the countries with which it works to refer to holistic support for children's cognitive, physical, language, motor and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before birth through the transition to primary school. The World Bank's Investing in the Early Years (IY) Framework highlights the need for investments in children across three pillars to ensure they reach their full potential: (1) children are healthy and well nourished, especially in the first 1,000 days; (2) children receive early stimulation and learning opportunities; and (3) children are nurtured and protected from poverty and stres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services and programmes ar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types: (1)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ECED) programmes designed for children in the age range of 0 to 2 years; and (2) pre-primary education programmes designed for children from 3 years of age to the start of primary educ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refers to programmes for children from birth until entry into primary education. The ECEC Quality Framework covers five dimensions: (1) quality standards, governance and financing; (2) monitoring and data; (3) workforce development; (4) curriculum and pedagogy; and (5)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Early Childhood Education (ISCED 0)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ISCED Level 0 programmes (Early Childhood Education) target all children below the age of entry into ISCED Level 1 (Primary Education) and refer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mes that have an intentional education component. There are two categories of ISCED Level 0 programmes: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programmes have educational content designed for younger children from 0 to less than 3 years, while 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is designed for children from age 3 years to the start of primary education.

##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지칭하는 한글 용어(해당 한자 포함)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이 용어들은 연령대나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나 사용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생아(新生兒):** 막 태어난 아기, 특히 생후 1개월 이내의 아기를 가리킴
  - Neonate: 생후 첫 28일 동안의 아기를 특히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 **영아(嬰兒):** 생후 1개월부터 2세 미만의 아기를 지칭
  - Infant: 일반적으로 생후 1년까지, 또는 때때로 2세까지의 아기를 의미함
- **걸음마아(걸음마兒):**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더 일상적인 한글 용어임.
  - 영어로는 toddler라고 하며, 주로 걷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 대략 만 1세에서 만 3세 사이를 지칭함
  - 보행아(步行兒):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한자어임. '보행'은 걷기를 의미하므로,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의미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님

##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2)

- **유아(幼兒, 猶兒):** 한글로 모두 '유아'라고 읽히는 '幼兒'와 '猶兒'는 한자의 의미가 다름
  - 猶兒 (유아)\*\*: '젓을 유(猶) 자를 사용함. '머무를 유(猶)'의 의미도 가진 이 한자는 아직 젓을 먹는 어린 아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됨. 이는 매우 어린 아동, 보통 유아(幼兒)보다 연령대가 낮은 영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함.
  - 幼兒 (유아): '어릴 유(幼) 자를 사용함. 이는 아이가 매우 어릴 때를 의미하는데, 이 한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나 '미성숙한'을 뜻함. 이 용어는 대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 아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한국에서 유아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을 일컫는 말로 흔히 쓰임.
  - 猶兒 라는 한자는 전통 육아에서 사용되다가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굳이 비교하자면, '幼兒'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유아교육 대상 연령을 포함하는 반면, '猶兒'는 보다 어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 두 용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연령대의 아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3)

- **소아(小兒)**: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을 넓게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보통은 유아나 어린이에 해당됨

참고) 우리나라에서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소아'와 '청소년'의 구분은 주로 연령에 기반을 두고 있음.

첫째, 소아(小兒): 일반적으로 출생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지칭함. 이 단계는 성장과 발달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초기의 영아기부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까지를 포함함

둘째, 청소년: 대략 13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대를 가리키며, 이는 사춘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발달 단계임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이 두 연령 그룹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 분야로, 출생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발달, 질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의료 활동을 포함함

- **어린이**: 일반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포함해 넓은 범위의 어린 아동들을 지칭함



| 토론 |

-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前서울지회장  
정원준 수원대학교 교수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





## 『영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을 중심으로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결정은 단순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명칭은 유보통합의 목표와 가치를 함축하며, 교육과 돌봄의 통합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 정책적 원칙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공청회는 유보통합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의적절하다. 이에 본 토론자는 이완정 교수님과 고영미 교수님의 주제발표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결정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완정 교수님은 통합기관의 명칭이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명확성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중립성은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명칭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포괄해 아동과 그 가족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통합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평등을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완정 교수님은 문화적 적합성, 지속 가능성, 확장성, 그리고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명칭이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기관의 역할이나 범위의 확장과 법적 사용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원칙을 토대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기관의 명칭을 결정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고영미 교수님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왜 학교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화두로 이에 대한 해답을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 의미를 포괄하는 논지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첫째는 법적 명칭과 사회적 인식의 불일치 해소의 필요성이다. 다수의 법령에서는 유치원

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법과 실제 인식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는 재정 안정성과 국가의 책무성 확보이다. 유보통합기관이 교육부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공교육의 시작점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 및 연속성 보장이다. 유아기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체제와 명칭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명칭을 통해 유보통합기관이 평생학습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적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국제적 추세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명칭 변화의 필요성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OECD 국가들은 이미 영유아교육을 ‘학교’ 체제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교육법 내에서 ‘학교’로 명시함으로써 돌봄을 넘어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유보통합기관을 ‘학교’로 명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원들의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학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이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약 92%는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에 ‘학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학교’라는 용어는 유·보 이음에서 유·초 이음으로 연결되는 공교육 사이의 연결성을 상징하며, 초, 중, 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과의 ‘학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일관성 유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학교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과 보육의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 단체의 요구의 반영, 그리고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고영미 교수님의 발표 주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지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다. 조사 결과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크게 다음의 세 개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것은 바로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어린이학교’이다. 먼저, ‘영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약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정 이유는 대표적으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0~2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0~5세 모두를 포괄할 수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포용한다는 의미에서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유아학교’ 명칭은 ‘영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예상된다는 점도 많은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약 16.7%로 나타났다. 선정 이유는 대표적으로 양육과 교육의 개념이 엄밀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영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영아의 양육까지도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부모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정규 공교육체제는 3~5세 중심의 유아학교로 하여 0~2세 교육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영아집단 기관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었다. 끝으로 ‘어린이학교’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약 8.3%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이유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추천한 순수우리말 사용과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그리고 어린이라는 용어가 0~5세를 포함하고, 나아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범위로 확장되어 용어의 포괄성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은 단순히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와 논의에 따르면,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으로 ‘영유아학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0~5세 연령대를 모두 포괄하며, 통합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평등을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선정은 단순히 의견의 다수결이나 표면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돌봄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명칭은 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함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유보통합의 목표와 가치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모색하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유보통합기관을 위한 미래지향적 명칭 고찰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유보통합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이름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명칭의 도출 결과 못지않게 명칭을 논의하는 과정은 유보통합이 담아내야 할 방향성 수렴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는 전제로 향후 통합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명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영유아, 부모, 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토론의 출발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담긴 ‘영유아학교’ ‘유아학교’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명칭의 조어법은 영유아(또는 유아) + 학교로 구성된 복합어임으로 ‘유아 또는 영유아’의 의미, ‘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나누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 1. ‘영유아’ 또는 ‘유아’ 용어 사용에 대한 고찰

‘영유아’ 또는 ‘유아’ 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유아’ 보다는 ‘영유아’가 전체 연령을 포괄하는 정책이나 접근에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는 ‘유아’라는 용어에 비해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발달적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 복지 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 까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유아’를 0세부터로 지칭하게 된다면 동일 용어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연령으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18세미만), 아동복지법(18세미만), 형법(16세미만) 등 관

련법과 소관부처에 따라 연령 범위가 제각각인 혼선이 있어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유아’는 적절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을 만드는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유치원’ 명칭의 순화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순화대상 어휘는 고유어로 바꾸는 기준을 고려해본다면 ‘유아(幼兒)’ 또는 ‘영유아(嬰幼兒)’ 대신 ‘어린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제안하여 보급된 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의미가 있고, 활용성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청소년까지도 포괄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며, 도로교통법 등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로 정의하므로 ‘초등학교’와 구분하기에 대상 연령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은 우리나라 교육행정 체계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영유아들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영유아의 삶과 놀이에서 살아있는 단어로 불려지고 사용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대상의 연령대를 지칭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 보다는 지향점을 담은 용어를 구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탁아소(託兒所)라는 명칭에서 1968년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의 고민을 반영하여 영유아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 되기를 지향하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학교’ 용어 사용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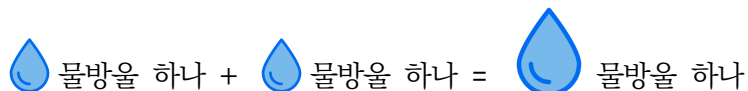
‘학교’는 영유아 시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그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면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어와 사회 문화는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관의 명칭 역시 우리사회의 인식과 연결하여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학교’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으로 이해됩니까? ‘학교’가 가지는 담론은 교육의 전문성, 신뢰성, 공공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 ‘학교’ 담론의 효율성, 수월성, 경쟁추구의 논리는 영유아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는 형식적, 학문적 교육을 떠올리게 하여 부모와 사회가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영유아 시기 주도적인 경험을 통한 배움의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학’, ‘입학’은 부모들에게 긴장, 부담, 준비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고유한 배움의 방식이 ‘학교’ 담론이라는 초월적 기준의 논리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학교’라는 용어 사용 시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 공공성과 영유아 교육이 지향하는 실체가 분리되는 지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간 학교라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었지만 학교로 간주되지 않은 유치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되었던 관점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담론 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새로운 담론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있어서 다른 언어, 다양한 언어를 모두 가치있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이 때 각 언어는 각자의 운영원리와 규칙이 있으며 다른 언어로 통제하거나 환원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의 이분법적인 논리(either/or)를 벗어나, 각 패러다임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두의 논리(both/and)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는 ‘학교’의 전통적 이미지를 벗어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영유아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용어를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돌림자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대하는 바를 이름에 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을 유지·고수하는 관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육을 논의하는 시점이므로 역사와 전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생학습의 토대로 영유아 교육의 지평을 넓혀야 하며, 영유아 교육이 담보해야 할 공공성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질문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1=2인데,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왜 물방울 2개가 되지 않나요?

$$1+1=2$$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앞뒤 안 맞는 논리가 아닌 문제점과 생각의

충돌 지점입니다.  $1+1=2$ 는 자연수 연산에 관한 논리이고, 물방울 더하기는 물리적 현상에 관한 질문으로 두 질문은 동일한 가정의 접근이 아닙니다.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0세 이후 모든 영유아를 어린 학습자로 간주하려는 교육적 관점으로의 변화와 학교(공교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체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논의가 아니므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지향하는 영유아의 배움, 성장을 지향하는 개념을 학교라는 단어로 요약할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왜곡 없이 답을 수 있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바꾸어 부를 명칭을 찾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없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관의 탄생을 함께 고민하는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유보통합기관이 가지는 파급력과 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을 기대합니다.

## 아이 행복이 담보되는 통합기관 명칭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정부는 6월 27일에 유보통합 3대 과제를 담은 역대급 유보통합안(이하 6/27 발표)을 발표하였습니다. 애초에 저출생 극복 및 학부모 부담금 경감과 더불어 '아이 행복'을 표방한 유보통합이었기에 하향평준화 불안감이 컸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27 발표는 유치원 현장의 기대감은 온데간데없고, 별집을 쭈셔 놓은 듯 불안과 혼돈의 미궁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만 두어야 하는 거야?' 등등

그것은 6/27 발표가 마치 침대의 길이에 넘치면 잘라내고, 길이에 못 미치면 억지로 늘려서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내용이 침대의 길이만 알려주고, 기존 현장이 그 길이를 맞출 수 있도록 인격적이며 배려적인 복안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는 '명칭'입니다. 명칭은 곧 기관의 총체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6/27 발표는 명칭에 대해 영유아학교로 할 것인가, 유아학교로 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두 명칭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학교'라는 점으로 보아 ○○학교로 정해질 듯합니다.

'학교'의 명칭은 영/유아 대상을 위한 교육기관임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학교' 명칭을 단순히 고유명사로 사용할 것인지, 영/유아 대상 생애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유치원은 이미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였습니다. 학제를 표기할 때도 유/초/중등/고등으로 생애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아교육법 제정 전에 세워졌던 사립유치원들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유아교육 기관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희생은 국민(유아)이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설립에 재산을 출연한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재산권은 상실되었고, 각종 규제와 지도 감독, 감시 등 행정 편의주의 관리 체제로 운영자율권마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유아들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배제되어 공립유치원 유아들에 비해 역차별을 당했으며,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의 반값 운영에도 불구하고 비리 집단으로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고영미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도 스스로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120년 역사를 주도하며 오늘날 눈부신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사립유치원의 땀과 수고는 온데간데없고, 사립유치원은 점점 그 설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6/27 발표에 따르면 유보통합 기관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사립유치원과 전체 어린이집이 사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관수로 집계해보면 사립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사립의 신설은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부족과 운영비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하면 마치 사립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학교'로 전환되는 역사를 조명해본 것은 새롭게 구축되는 유보통합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그 환경은 국가가 먼저 영/유아의 신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 초기 기초교육 '학교'라는 인식 제고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학교'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에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통합 이후 대부분의 기관이 사립인 점을 감안하여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사립과 공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사립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명칭이 정해지고 '학교'로서 통합법이 제정되면 모든 기관은 제정된 통합법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통합법에서는 이전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강제된 사립유치원의 희생과 고충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관에 다니는 취원 대상 연령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도 0~5세, 2~6세로 통합기관 취원 대상 연령구분이 명확합니다. 고영미 교수의 발제에서 예로 든 대다수 OECD 회원국도 그렇습니다. 그 명칭도 인정어린이원, 유아원 그 외 유아학교로 취원 대상 연령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6/27 발표에는 통합기관 대상 연령을 0~5세로 하되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칭을 하나로 정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학교'라는 명칭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데, 이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영아가 통합되어 '영유아학교'로 할 때 유치원이 체감하는 학교는 한 단계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또한 그 명칭 속에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 우리의 학제가 유치원/초등/중등/고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취원 대상 연령이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이상 자연적으로 영아가 없는 기관이나 영아가 없는 기관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은 이분법적 구분이 담기지 않고 학제로서 연계성이 용이하며 기관의 자율적 취원 대상 연령에도 적절한 명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된 명칭은 이완정 발제자가 풀이한 '유아'의 다양한 뜻을 고려해볼 때 '유아학교'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관의 취원 연령 자율 선택에 따라 달라진 기관별 환경을 감안하여 유아학교(가형: 영/유아 전담), 유아학교(나형: 유아 전담), 유아학교(다형: 영아 전담)으로 하여 취원 연령별 기관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로부터 기관 선택의 혼란을 막고, 기관은 연령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교사는 유아와 영아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영아교사와 유아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에게는 스스로 두 개의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육과정도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영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구분하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비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인 우리의 유보통합 중심에는 ‘아이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아이행복’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 정해지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3.1)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23.12) 및 시행(24.6.27)을 계기로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오늘 논의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공청회도 유보통합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학부모, 교사,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통합기관의 명칭은 유보통합의 정의, 목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기관의 명칭에 따라 교사자격, 기관의 운영 형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①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②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선정 시 고려할 점 등에 대한 발제문에서도 ‘통합기관의 명칭’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본 토론자는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바라는 입장에서 ‘유보통합기관 명칭 선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만0 ~ 5세(6세 미만 취학전 아동)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 ‘영유아’

○ ‘0세부터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은 ①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3.1)에서도 대상아동을 ‘만0~5세 모든 아동’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②OECD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동향에도 부응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③UNESCO의 국제교육 분류체계에서도 ‘0세~취학전 6세미만(5세)’ 아동을 포괄하는 ISCED 0단계를 추가(2011년)하여 ISCED 0단계를 기초교육 시작단계로 보고, 0~5세를 포괄하는 영유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유보통합의 한 축인 어린이집은 영아반(0~2세)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아반(3~5세)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아반+유아반 모두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반 운영현황(24.4월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 기준으로는 영아(0~2세)+유아(3~5세) 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27,189개소)의 4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운영 기준으로는 전체 152,011개 반 중 0세~5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의 반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85,526개반(56.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명칭은 정부의 유보통합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관의 운영 및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를 포괄하는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현황(‘24년 4월말 기준)〉

구분	개소수*	반수
영아(0-2세)	15,229 56.0%	64,750 42.6%
유아(3-5세)	294 1.1%	1,735 1.1%
영유아(0-5세)	11,666 42.9%	85,526 56.3%

구분	개소수*	반수
합계	27,189 100.0%	152,011 100.0%

\* 현원 0명 및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552개소)

※ 어린이집 반편성 현황을 통해 해당 연령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산출

자료:보육통계 재구성

## □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칭으로 ⇒ 영유아 ‘학교’

○ 현재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아이행복연구자문단> <관련학회> 및 <현장 토론회> 등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과정>에, 3~5세는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보육·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영아는 돌봄의 대상이고, 유아는 교육의 대상이라는 잣대로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제는 영아에 대한 보육을, 영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명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하던 정선아 교수의 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아는 영아답게, 유아는 유아답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아가 세상과 만나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고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말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차별입니다. 영아도 배우의 주체이며, 배우의 대상입니다. 영아는 영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미 보육의 영역에 있었던 영아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나요? 교사의 시선에 따라 세상과 교감(만져보고, 바라보고 등)하고, 또래를 다독여주는 것도 배우고, 혼자서 손가락을 쥐고 밥을 먹는 것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며, 세상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아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유아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의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처: 정선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유보통합 함께하기' 중에서

○ 따라서, 저는 통합기관의 명칭에는 **첫째, 현재 유치원의 법적성격인 '학교'의 지위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현재 학교가 가져야할 법적 기본요건에서 접근성 기반 영유아보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통합기관은 학교체계로서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통합기관은 학교체계로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통합기관의 교사 또한 공공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처우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 물론, 영유아 통합기관이 학교체계로 위치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제반요소가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초저출생 시대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큰 방향에서의 결단이 향후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초저출생 시대에도 어렵지만 묵묵하게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27,000여개소의 어린이집과 26만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여전히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에도 우리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함께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영아와 유아 모든 연령의 보육을 실천하고 담당해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  
.....  
.....  
.....  
.....  
.....  
.....  
.....  
.....  
.....  
.....  
.....  
.....  
.....  
.....  
.....  
.....  
.....  
.....





## 생애 첫 학교 교육, 유아학교에서 시작!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은 그간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회에서 명칭 개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며 각 시도교육감도 여러 차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답보상태이다. 유치원의 명칭을 개칭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노력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학교→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치원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주목받지 못함</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법 제정 시 유치원 명칭 변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유관부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 · 문화관광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민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이후 교육계를 비롯한 유관부서에서 논의가 지속됨.</li> </ul> </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총 주최 대선주자 초청 릴레이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 건의</li> </ul> </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등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li> </ul> </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발전 종합계획 중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 논의</li> <li>▪ 국회의원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등 15인이 2009년과 같은 법안을 발의</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학교로’의 의미: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서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li> </ul> </li> </ul>

주요 개정 노력	
	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명칭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 서울시교육감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 논의</li> <li>▪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 비영리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주장</li> <li>▪ 참여연대, 양질의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울 것을 주장</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전교조·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잔재 청산 촉구(유치원 명칭 변경 사안 포함)</li> <li>▪ 서울시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시도교육감 공동건의 제안</li> <li>▪ 울산시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제 잔재 청산 추진(유치원 명칭 개정 사안 포함)</li> <li>▪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에 법안 개정 촉구 (~2020)</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유아교육의 공교육 위상 및 역할 정립 -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일제 강점기 명칭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맞게 변경)</li> <li>▪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 8·15 광복 75주년 기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유치원 명칭 변경 촉구이후 지속 요구 중</li> <li>▪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0.10.28.)</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 출범</li> </ul>

## I. WHY? (왜 ‘유아학교’여야 하는가?)

### 1. 일제 잔재 청산 (민족 주체성 확립)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유아교육기관은 1897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부산에 세운 ‘부산유치원’이다. 일본인 자녀만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유치원’이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幼稚園(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幼稚園(요치엔)’은 일본이 독일어에 어원을 둔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을 그대로 직역하여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광복 79주년이 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그 수많은 잔재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유아가 배우고 성장하는 생애 첫 교육기관의 명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주역이었던 이극로 박사는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라고 하며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언어에 담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관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라는 말에 담긴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여 유아학교가 민족주체성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는 유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잔재로 지목받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이미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유치원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시급히 유아학교로 개칭되어야 한다.

## 2. ‘유치(幼稚)’라는 부정적 의미를 유아교육기관 명칭으로 사용 부적절

우리말에서 ‘유아(幼兒)’라는 말과 달리 ‘유치(幼稚)’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유치하다’, ‘유치찬란하다’ 등의 파생어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유치하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으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아니하고 주로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으로 쓰여 상대를 비하하고 낮출 때 많이 사용된다. ‘유치찬란하다’는 단어 또한 유사하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유아, 어린이와 같은 대중적으로 쓰이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어휘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학교’ 명칭 사용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유아교육을 위해 두는 기관이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 역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하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에 붙이는 명칭의 계열성과 보편성에 부합하도록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를 위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의 절박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 발전하려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에 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도 크게 강화되고 유아교육기관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유치원이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교육기관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한다면 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닌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주체가 다시 한번 공공성과 책무성을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이다.

## II. HOW? (구체적인 방안은?)

###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024.06.27.)에 따른 ‘학교’ 명칭 사용 (학교 기준 미충족 기관 제외)

**통합기관 개요**

-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 기존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예: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운영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행재정 지원 제외 검토

〈출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06.27.)〉

2024년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과,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제외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학교체제로 상향시키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라고 해석된다. 국가책임 하에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유아교육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유치원의 설립·운영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학교’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설립·운영 기준으로는 교실, 화장실, 교사실, 조리실, 체육장, 안전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학교의 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갖춘 정교사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 적극 동의한다.

### 2. 0~2세, 3~5세, 0~5세 등 대상 연령에 따른 명칭 선택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명시한 설립과 운영 측면의 ‘유연성과 다양성’ 강조는 0~5세 모든 영유아를 무조건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획일적 기관 통합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관의 명칭도 이에 따라 영아 전담 기관, 유아 전담 기관, 영유아 전담 기관으로 유연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완정 발제자의 기관 명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에 따라, 명칭을 통해 누구나 기관의 주된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면 기관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영아/유아/영유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원칙으로 밝힌 ‘중립성’에 따라, 매우 중립적이며 공평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발제자의 자료 중 UNICEF는 출생에서 8세까지의 기간 중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의 대상을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조직화된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3세 이전의 영아는 ‘유아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시기로 신체, 인지, 운동, 언어, 사회, 정서적 발달을 포괄하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여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0~2세는 유아교육개발(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예비초등프로그램(pre-primary program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역시 0~3세는 유아교육개발(educational development),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예비초등교육(pre-primary edu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제30조,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종의 수직적 통합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묶인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합친 형태도 가능하다. 일명 초중학교, 중고학교, 초중고등학교라 불린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1명에 각 학교급별로 교감을 두는 체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을 비롯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건물 신축 비용이나 행정 인력 공유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발달적 차이에 따라 각 학교급은 구분되어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고, 지역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융통성있게 공간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 차이에 따라 학교급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확립하고, 학교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만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단지 기관의 명칭만 같아지게 한다고 해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기관의 명칭에 걸맞는 학교 체제(설립 및 운영 기준, 교원 자격취득)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영유아의 차별없는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래 표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명칭 제안		
조건 대상 연령	‘학교’ 기준 미충족	‘학교’ 기준 충족
0~2세	어린이집	영아학교
3~5세	어린이집	유아학교
0~5세	어린이집	영유아학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024.08.23.)

### Ⅲ.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의 기대효과

#### 1. 유아 -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증대

유아기는 평생을 아우르는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가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편차가 생기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며 교육 주체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를



갖춘 기관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2. 학부모 -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증대

2018년 국회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3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270일간 법안이 계류되었다가 긴 우여곡절 끝에 유치원3법은 통과되었다.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유치원이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치원이 명칭에서부터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3. 기관 - 학교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

‘유치원’이라는 기관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의 명칭으로 인해 각종 정부 부처에서도 학교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위유치원은 학교로 인식되지 않아 급식 및 영양 인력·보건인력·행정인력 등의 필수인력 미배치, 초·중등학교에 비해 늦어지는 법 개정 및 관련 업무에서 제외(생활지도법,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개최 등)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위와 같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있기에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통해 유치원도 학교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 지원에 따른 교육 연구 시간의 증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4. 교원 - 교육자로서의 위상 제고

국공립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초·중등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논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복지 측면에서 교원 혜택 사업 시 유치원 교사 제외 등 다양한 차별을 가져온다.

따라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는 교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아학교로 명칭 개칭을 통해, 유치원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 아동권의 최우선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자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前서울지회장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생애 초기부터 차별 없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랜 과제였으며 지난 6월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명칭은 유보통합의 정체성과 목표를 반영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기본이고 이혼, 사별, 또는 미혼 부모 등 다양한 이유로 형성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여 형성된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데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에는 토론회 주제를 받아들이고 유아학교라고 해야 하나 영유아학교라고 해야 하나 자격은 통합을 해야 하나 분리를 해야 하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기로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편을 시청한 것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아이는 유치원이 끝난 후,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태권도장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태권도장은 추가 비용 없이 아이를 돌봐주어 한부모 가정인 엄마에게는 매우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만 3세 아이는 발달과 정서에 적절한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그저 엄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관장의 장난이라는 사고로 인해 아이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내가 일하는 어린이집이었다면 야간 연장반에서 규칙적으로 저녁을 먹고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엄마를 기다렸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최선의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며 불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생을 장려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태어나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켜내고 품어주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정의와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은 이러한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법적 증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부족해서 특별하게 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같은 출발선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아이들의 권리' 라는 개념으로 유보통합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시작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담지 못하는 아이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이 '깊은 그릇'이라면, 보육은 '넓은 그릇'입니다. 유보가 통합되면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옹기 같은 유보통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보육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아동보육과 같은 학과들이 대학과 전문대학에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보육과의 설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유아 발달, 보육 이론, 실습 등을 통해 보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었고 2005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약 22만 보육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0-5세 전 연령의 영유아가 연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유보통합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영아 보육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가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발달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령을 구분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이 '이음 연령'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영아기를 건너뛰고 유아기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유보통합의 기본은 영유아 시기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교사의 역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0-5세 전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저하되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자격 안에서 영아전임교사, 유아전임교사, 특수교사로 각 교육 과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보통합은 국공립 유치원에도 영아반을 신설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영아 전담 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이 한 기관에서 연속성 있게 영유아 시기의 성장과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보통합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동은 물론 인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아이들의 상황과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1991년 보육교사 선배들이 치열하게 만들어낸 ‘영유아보육법’은 유아교육법으로 통합되면서 그 명칭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명시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이념은 언제나 보육교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낸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자로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아동권의 최우선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진짜 선생님’ 으로 함께 유보통합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유아학교’든 ‘영·(점)유아학교’든 ‘영유아학교’ 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아이들을 넓게 품을 수 있는 명칭이 정해지길 바라며 지금이 유보통합의 더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도 '같은 노동, 같은 임금' 원칙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호봉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이후 유보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로서 모두의 고민과 지혜가 담긴 유보통합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 1. 교육적 연속성의 강조

유보통합기관의 주요 역할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아 교육과 초등 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아동이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일관된 교육적 경험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아동과 학부모 모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 2. 공교육 체계와의 일관성

‘학교’라는 명칭은 공교육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유보통합기관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관의 교육적 목표와 역할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운영과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3. 사회적 인식과 접근성 향상

‘학교’라는 명칭은 사회적으로 널리 이해되고 인식된 용어입니다. 이는 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기관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

### ○ 영아들을 위한 보육 개념의 부재

- 앞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많은 이유과 근거들에는 대부분이 유아에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며 학교라는 단어가 주는 학습과 교육 중심의 이미지는 영아 부모에게는 거부감이 듭
-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많은 경우가 돌 전,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육의 개념 또는 이미지도 포함하는 명칭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 물론 명칭이 학교일 뿐, 보육과 교육이 아이의 발달에 맞춰 이루어지겠지만, 명칭 자체에 앞서 이완정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 원칙에 해당하는 명확성(기관의 목적과 서비스), 포괄성(다양한 연령대를 포함), 문화적 적합성(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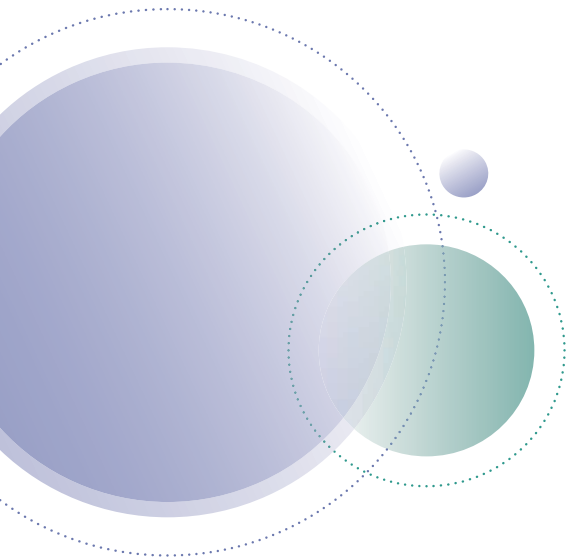
### ○ 관련 법령들의 짜 맞춤

- 학교로 명시된 법적 근거
    -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교육기본법)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유아교육법)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유아교육법)
- : 위의 세가지 법령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유아’임  
 하지만 최근 정부조직법 28조가 ‘교육부장관은 영·유아 보육, 교육, 학교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6> 로 개정이 되면서 학교교육의 대상자가 0-2세를 포함하여 확대된 것으로 보여짐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들어간 법령이라고 생각이 될 뿐 이 조항이 학교로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때를 생각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변경된 명칭에 익숙해질 것임.

하지만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또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게 된 경우, 근거 등을 제대로 제시해야 변경하게 된 목적에 맞게 이미지화 되고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됨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